교양대학 규정

제 정 2018. 05. 03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학칙 제2조 및 제61조의2, 직제규정 제6조에서 정한 교양대학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교양대학은 학생들에게 기초교양과 소양교양 및 심화교양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의 인성을 키우며, 나아가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지성교육의 역량강화를 통해 취업과 진로탐색을 지향하는 교양교육과정을 관리한다.

제2장 조직과 업무

제3조(학장) ① 교양대학에는 학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일반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교양대학장은 교양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조직) ① 효과적인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양대학에 교양교과위원회와 교양교육연구회를 설치한다.

② 교양대학의 행정, 예산운영, 학사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학부를 둔다.

③ 교양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공학과(학부) 일반교원을 교양대학 소속 겸직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5조(업무) ① 교양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2조 임무 수행을 위한 교양교육과정의 기획, 편성 및 운영
2. 이러닝교양강좌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
3. 전공학과(학부)가 개설한 교양교과 운영에 대한 협의
4. 교양교육 관련 연구 및 전공교과와의 연계·소통체계 개발 연구

② 교양대학은 교내 교양교육 이외에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시민교양강좌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 및 연구회 운영

제6조(교양교과위원회) ① 교양교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양교육의 방향과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
2. 교양과목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(교육 수요자 요구 또는 만족도 조사 포함)
3. 교양교육 과정의 영역 구분, 개설학기 구분 등 교양교육 편성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는 교양대학 학장과 교무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교양대학 일반교원 2인, 교양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별 1인의 일반교원, 2인 이내의 이러닝교양교과 담당교수 및 지역사회의 덕망있는 외부위원 1인으로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교양대학장이 위원장을 맡는다. 그리고 학사관리부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교양교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전 기획과 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실무팀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 후 시행한다. 단, 과목명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교양교육연구회) ① 교양교육연구회는 교양대학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교양교육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대학의 교육이념에 부응하는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및 연구
2.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의 철학을 구현하는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및 연구

② 교양교육연구회는 교양대학 소속 교원으로 임명하고, 그 책임자는 교양대학의 일반교원 중 교양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교양교육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기획예산부-246, 2018.05.03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특성화기초대학 규정은 폐지한다.